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정재웅 의원 (찬성자 30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599 호

다. 발의일자 : 2021. 8. 11.

라. 회부일자 : 2021. 8. 18.

## 2. 제안이유

- 안전총괄실 조직개편('20.11.1.)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고, 시장으로 하여금 다른 자치단체 등과 안전 분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분야 협력구축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,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 담보를 위해 반기별 실적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골자

- 가. 간사 지정에 조직 개편사항('20.11.1.)을 반영함(안 제12조제5항).
- 나.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의무를 규정함(안 제 49조제4항).
- 다.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안전분야 협력사업 시행 관한 임의규정을 추가 신설함(안 제50조제2항).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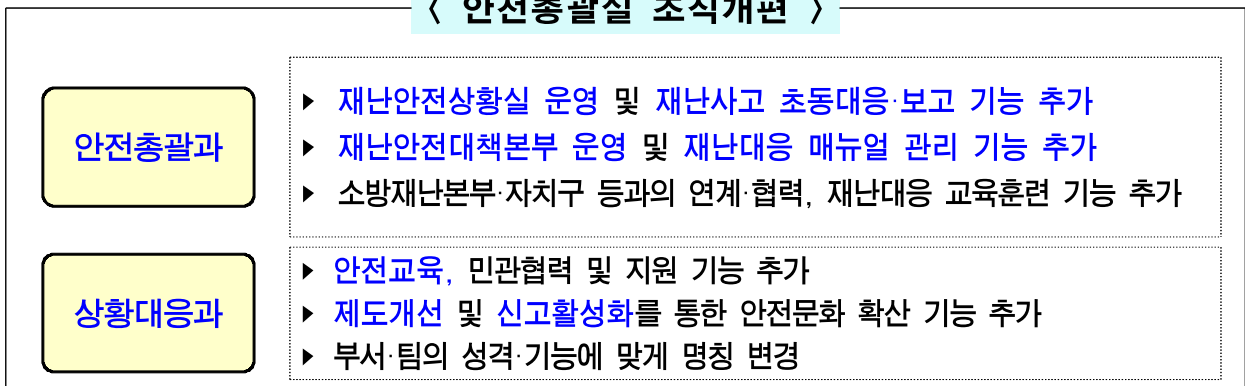
- 본 개정안은 '20.11.1일자 안전총괄실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고(안 제12조제5항),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추진실적점검을 실시토록 하는(안 제49조제4항) 한편,
- 다른 자치단체 등과 안전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(안 제50조제2항)코자 하는 것임.

[표] 신·구조문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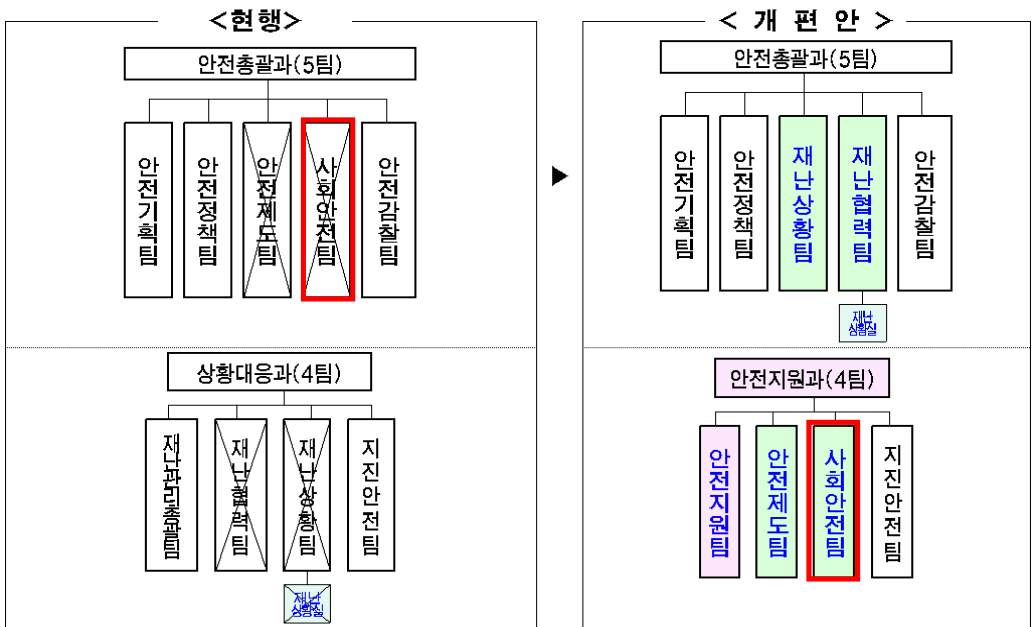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 ~ ④ (생 략)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<u>시의 안전정책 및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주무과장으로 한다.</u> ⑥ ~ ⑨ (생 략)	제12조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<u>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.</u> ⑥ ~ ⑨ (현행과 같음)
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	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<u>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.</u>
제50조(국제교류 및 협력사업) 시장은 도시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·산업체, 국제기구 등과 재난방지·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 <u>&lt;신 설&gt;</u>	제50조(국제교류 및 협력사업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 <u>② 시장은 효과적 재난 대응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안전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

- 먼저, 현행 조례 제12조제5항은 협력위원회 간사를 시의 안전 정책 및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주무과장 즉, 안전총괄과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,
- '20년 11월 1일자로 효과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총괄실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당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(이하 '협력위원회')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안전총괄과 내 사회안전팀이 안전지원과(舊 상황대응과)로 이관되었음.

〈 안전총괄실 조직개편 〉



- ❖ 상황대응과 2팀('재난상황팀', '재난협력팀') 이관 → 안전총괄과
- ❖ 안전총괄과 2팀('안전제도팀', '사회안전팀') 이관 → 상황대응과
- 명칭변경 : 상황대응과 ⇒ 안전지원과, 재난관리총괄팀 ⇒ 안전지원팀



- 이에 안 제12조제5항은 사회안전팀을 관할하는 안전지원과장이 협력위원회 간사를 맡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문제는 없음.
- 다음으로, 안 제49조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 ‘안전관리계획’에 대한 추진실적점검을 시장으로 하여금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, 이는 안전관리계획의 실행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의미있는 조치라 하겠음.
- 참고로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제1호1)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·도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2021년 시·도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(’20년 10월)의 경우 시·도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 환류체계 마련과 함께 재난관리평가지표에 시·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점검항목을 반영하고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 대비해 이미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보고를 이행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며, 따라서 동 개정안은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안전관리계획

1) **제42조(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)**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·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.

1. 집행계획, 세부집행계획, 시·도안전관리계획 및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
2.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실태
- 2의2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
3.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실태
- 3의2.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·운용 및 관리 실태
4.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·물자·장비·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
5.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
6.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사항 등

② ~ ④ (생략)

의 추진실적 점검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 여겨짐.

- 마지막으로, 안 제50조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안전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,
- 이는 현행 조례 제3조제4항2)에 따른 시의 책무와 일맥상통하며, 안전분야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전문성 강화, 그리고 상호협조체계 구축 등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.

- 
- 2) **제3조(시의 책무)** ①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, 조언,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,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